

청년월세 지원금 청구 관련 주요사항 안내

□ 지원금 청구방법

- 서울주거포털 → 마이페이지 →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→ 자세히보기 → ‘지원금 청구 등록’ → 해당 회차 등록
 - 추가합격자의 경우 지원금 청구 등록 전에 약정체결(동의)을 해야 함

□ 첨부서류

- 해당 월에 이체(납부)한 계좌이체 확인증 등
- '22년 2회차의 경우 9월, 10월, 11월(3장)
 - 몇월분 월세에 해당하는지 상관없이 해당 월에 이체한 내역을 의미함
 - 서류미비, 미청구, 추가합격 등으로 1회차(6~8월분)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6월~11월까지 총 6장의 첨부서류 등록

□ 이체일자,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

- 해당 회차의 마지막 달 기준으로 작성
- '22년 2회차의 경우 11월 이체내역 작성(9,10,11월 합산 아님)

회차	해당 이체 월	월세 이체일자	이체금액 (단위: 원)	이체금액 중 월세 해당금액 (단위: 원)	월세받는사람	입급자	증빙자료
1회차	6,7,8월	2022-08-20	500,000	400,000	임모진	김청년	파일 선택 파일 선택 파일 선택

이체일자는 2022-11-00
이체금액은 11월에 이체한 금액

첨부파일은 3개까지 가능
이를 넘을 경우 압축하거나
하나의 PDF 파일로 첨부

□ 지급중지 관련

- 해당 회차 기간 내에 중지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(이체증 등록 필수)
- '22년 2회차(9~11월분) 예시
 - 10월중 중지사유 발생 : 9월 월세이체 ○, 10월 월세이체 × → 9월분 지급
9월 월세이체 ○, 10월 월세이체 ○ → 9, 10월분 지급

□ 월세납부 증빙서류

① 계좌이체(예시)

		<p>< 주요사항 ></p> <p>① 이체금액</p> <p>② 이체일자</p> <p>③ 보내는 사람 - 보내는 사람이 임차인과 같을 필요는 없음</p> <p>④ 받는 사람 - 받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임대인 및 공동임대인 - 계약서에 월세이체 대상으로 별도 지정된 사람(법인)도 가능 (월세이체 대상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표시, 수기도 가능) - 계좌번호는 확인대상 아님</p> <p>※ 계좌이체 확인증 양식에 상관 없이 위의 4개 항목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</p>
--	--	---

※ 계좌이체 확인증 발급 방법은 인터넷 포털에서 은행별 계좌이체 확인증 발급 방법으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, 각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 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음

※ 받는 사람과 임대인 일치를 위해서 해당 회차 기간 중 이사를 한 경우, 지원금 청구 전 전입신고 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함

② 카드결제

-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‘개인매출거래확인서’ 또는 ‘이용내역확인서’를 발급 받아 제출

1. 고객정보

주민번호		성명	1
카드번호		청구형태	0002

2. 매출내역

카드번호	
거래일자	2022/09/14 (07:10:25)
금액	26,100
승인번호	
가맹점명	4
사업자등록번호	
가맹점번호	
소재지	
업종명	기타
대표자명	4
전화번호	

2022년 09월 06일
신한카드(주)

04561 서울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(을지로27가)
대표전화:(카드) ☎1544-7000 / (환부) ☎ 1544-7100

< 주요사항 >

- ① 카드명의자
 - 카드명의자가 임차인과 같을 필요는 없음
- ② 거래일자
- ③ 거래금액
- ④ 가맹점명(또는 대표자명)
 - 가맹점명(또는 대표자명)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**임대인 및 공동임대인**
 - 계약서에 **월세납부 대상으로 별도 지정된 사람(법인)**도 가능 (월세이체 대상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표시, 수기도 가능)

※ 확인서 양식에 상관없이 위의 4개 항목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

※ 확인서 발급 방법은 인터넷 포털에서 카드사별 확인서 발급 방법으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,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음

※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등으로 가맹점명(또는 대표자명)이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

□ 첨부서류 보완방법

○ 구체적인 사례(예시)

- ① 10월 30일에 이사를 하면서 월세 납부일을 매월 25일로 정하고, 11월분 월세는 미리 납부하여 11월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(이전 거주지의 10월분 월세는 이미 납부하여 10월 이체내역이 2개인 상황)
- ② 10월분 월세를 연체하여 11월 2일에 납부하였고, 11월분 월세는 제때 납부한 경우(10월 이체내역이 없고, 11월 이체내역이 2개인 상황)
- ③ 매년 1월에 12개월분 월세를 연납하는 경우(1월 이체내역만 있고, 9, 10, 11월 이체내역이 없는 상황)

○ 보완방법

- ① 10월 30일 이체 확인증과 함께 월차임 납부 확인서(11월분) 제출
- ② 11월 2일 이체 확인증과 월차임 납부 확인서(10월분) 제출
- ③ 1월 이체 확인증과 월차임 납부 확인서(9, 10, 11월분) 제출

※ 위의 방법은 카드결제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

※ 월차임 납부 확인서 작성방법은 현금납부 증빙서류와 동일하므로 이전 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①번 사례의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지 변경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